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과징금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7. 07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행정처분 내용

업체명 (대표자)	업 종 (등록번호)	소 재 지	위반내용	처분근거	처분내용
아이본건설(주) (강동호)	토목건축 공사업 (16-0365)	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4길20	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5조제2항 위반	「건설산업 기본법」 제82조 제2항 제3호	과징금 (금6,657,500원)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(054-880-39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